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69 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발의자	이현숙 의원외 8명	발의년월일	2019. 2. 11.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경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연도별 노인복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 규정(안 제5조)

다. 노인복지정책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안 제6조)

- 라. 경로우대, 노인자살 예방, 노인의 날 행사를 규정(안 제7조~9조)
- 마.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정책연구 규정(안 제11조 및 12조)
- 바. 국제교류의 활성화 의무 규정(안 제13조)
- 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24조)
- 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27조)
- 자.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안 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추경 편성 필요
- 다. 사전협의 : 어르신행복과

II. 검토 의견

1.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초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임.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3.8%였으나 2018년에 14.8%로서 고령사회¹⁾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국 사회·경제·복지 등 분야별 여건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연도별 총인구 인구추계>

구 분	2017년	2018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총인구(천명)	51,446	51,826	51,974	52,610	52,941	52,834
65세이상 노인(천명)	7,076	7,654	8,134	10,508	12,955	15,176
노인인구 구성비(%)	13.8	14.8	15.6	20.8	24.5	28.7

- 또한 서초구의 최근 5년간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초구 전체 인구는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4년에 10.4%, 2016년 11.3%, 2018년 12.6%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임.

<연도별 서초구 인구 및 노인인구 추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구(명)	454,288	451,258	451,477	445,401	433,951
65세이상 노인(명)	47,469	49,280	50,984	53,205	54,663
노인인구 구성비(%)	10.4	10.9	11.3	11.9	12.6

1)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14% 이상),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20% 이상)로 구분됨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조례안은 서초구 여건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시대적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용산구, 종로구, 강남구, 강동구 등 총 20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도봉구와 양천구에서만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본 조례안과 같이 노인복지증진과 고령친화도시를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지자체는 현재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2. 주요 내용 검토

1) 기본이념(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노인은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였음. 이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라 우리구 여건에 적합하게 수용한 것으로 판단됨.

2)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3) 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본 조례안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특히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까지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6가지 사업(노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은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를 근거하여 도입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37%이고,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39.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8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노인실태조사를 감안할 때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3가지 사업(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노인문화시설 확충 등)은 『노인

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및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에 근거하여 도입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셋째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하기 위한 4가지 사업(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등)은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부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에 따라 도입되는 사업임.
- 넷째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2가지 사업(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에 근거한 사업이며,
- 다섯째 노인의 권익 보호와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3가지 사업(권익보호 강화, 세대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를 근거로 도입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안 제6조는 서초구 여건에 적합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별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경로우대와 노인자살예방(안 제7조 및 제8조)

- 안 제7조제1항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의무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6)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7) 국제교류의 활성화(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수용한 것임.

8)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안 제16조 ~ 안 제24조)

-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의 적정성 평가,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17조제2호의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8조에서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가 등 노인 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음.

Ⅲ. 참고자료

1. 관계법규
2. 노인복지 관련 시설현황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경로우대)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강진단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 ④ 삭제 <2015. 1. 28.>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 ⑥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노인주거복지시설(1개소)

연번	시 설 명	운영방식
1	방배3동 노인의 집	구립

○ 노인의료복지시설(2개소)

연번	시 설 명	운영방식
1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구립
2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구립

○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3개소, 경로당33개소, 느티나무쉼터3개소)

- 노인종합복지관

연번	시 설 명	운영방식
1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구립
2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구립
3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구립

- 경 로 당

연번	동 명	구립 경로당현황 (단위 : 개소)	연번	동 명	구립 경로당현황 (단위 : 개소)
1	서초 1동	1	1	반포 4동	1
2	서초 2동	1	2	방배본동	1
3	서초 3동	2	3	방배 1동	1
4	서초 4동	2	4	방배 2동	1
5	잠 원 동	2	5	방배 3동	2
6	반포본동	1	6	방배 4동	1
7	반포 1동	2	7	양재 1동	5
8	반포 2동	1	8	양재 2동	3
9	반포 3동	1	9	내 곡 동	5

-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연번	시 설 명	운영방식
1	내곡느티나무쉼터	구립
2	양재느티나무쉼터	구립
3	서초느티나무쉼터	구립

○ 재가노인복지시설(6개소)

연번	시 설 명	운영방식
1	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구립
2	본마을데이케어센터	구립
3	방배노인데이케어센터	구립
4	방배데이케어센터	구립
5	성심노인복지센터	구립
6	서초행복e음센터	구립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일자리사업) 사무위탁 운영)

연번	시 설 명	운영방식
1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2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3	중앙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4	느티나무쉼터	위탁운영
5	(사)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위탁운영